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073 |
|----------|------|

발의연월일 : 2017. 1. 12.

발의자 : 박완수 · 윤한홍 · 함진규
박명재 · 유기준 · 김정재
주호영 · 유민봉 · 윤후덕
이현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에 30여 개의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중에 물품도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은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공항공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려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 또는 퇴거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

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사법경찰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제6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퇴거명령 등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67조까지”를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로 한다.

제6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
|---------------------------|--------------------|
| 부과한다.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u>6.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u> | <u><삭 제></u> |
| <u>따르지 아니한 자</u> |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